

# 소독업신고, 신고사항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감염병관리계	454-5024	7일 (휴폐업:즉시)	없음

## 개 요

-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을 하여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소독업자가 30일 이상을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개설신고 :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신고서 작성 시 법인 인감도장 날인)
-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 :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원본), 변경사항 증명 서류
-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원본)

###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장비, 인력기준 적합여부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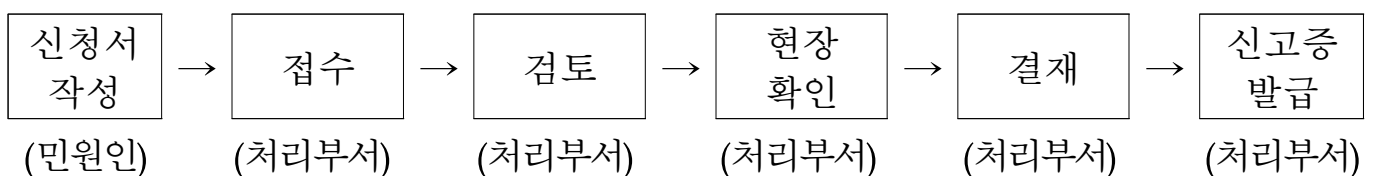
### 3.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5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 4. 기타사항

- 【사업자등록신청 : 군산세무서】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임차경우 한함), 소독업신고증사본
- 【면허세 납부 : 시중 은행】  
: 지방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개설신고 및 영업자 변경신고에 한함)

## 업 무 흐 름 도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처리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계	
사무내용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53조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 내용	접수처	처리부서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 (휴·폐업 즉시)
	최종결재	감염병관리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34,000원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비서류 검토</li> <li>현장확인시 시설, 장비, 인력 기준 적합 여부 확인</li> <li>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관련기준 적합 여부 확인</li> </ul>				
	현장조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적합 여부 확인</li> <li>건축물 관계 확인</li> </ul>				
	가부판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적합 여부</li> </ul>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53조</li> <li>「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li> </ul>					
구비서류	<b>[개설신고]</b> 1. 신고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b>[신고사항 변경 신고]</b> 1.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휴업·재개업·폐업 신고]</b> 1.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원본)					
처리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li> <li>신청민원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li> <li>현장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li> <li>민원처리 최종결정</li> </ul>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신청서식 등	소독업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휴·폐업, 재개업 신고서					
후속민원안내	<b>[사업자등록신청 : 군산세무서]</b>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소독업 신고증 사본 <b>[면허세 납부 : 시중은행]</b> - 지방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 납부(개설신고 및 영업자 변경신고에 한함)					
담당자	홍지혜			전화번호	454-5024	